

의안번호	2219978
의 퇴 인	임이자의원
회 답 일	2026.7.22.
추계번호	26B3564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1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5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 제42조¹⁾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「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」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,399억 800만원임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2024년까지 총 115개소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²⁾

1) 제42조(국고보조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·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2) 정화시설 94개소, 바이오가스화 시설 11개소, 퇴·액비화 9개소

을 준공하였으며 특히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11개소에서 21개소로 확충할 계획임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더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의 대상·수준·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